#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82

발의연월일: 2022. 11. 9.

발 의 자:최형두·박성민·백종헌

양정숙 · 엄태영 · 서범수

정동만 · 구자근 · 김태호

김성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은 재무적 여건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 장기 모험자본인 벤처투자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수단임. 기업가치평가와 융자가 곤란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해외의 선진벤처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벤처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현행 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인수·합병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아울리, 인수·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 여 인수·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운영(안 제51조의2 신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완전자회사로 설립하여 자금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는 인수·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수·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안 제62조)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설립·운영 되는 경우 이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이 가능하도록 함.

#### 법률 제 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운영) ① 벤처투자조합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 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4.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 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⑤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2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 ①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1조의2(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목적회사 설립 및 운영) ① 벤
	<u> 처투자조합은 「상법」에 따른</u>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제37
	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u> </u>
	2. 벤처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
	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
	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 으 이타하 거
	을 위탁할 것 ② 제1하에도 부그차고 주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 어 따는 베워기어에 대하 이스
	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

- ·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출자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사원이 출자할 수 있다.
- 1.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 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③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⑤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 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⑥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제52조제2항제2호 는 제외한다) 및 제61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 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⑦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관은 투자목적회사에 대 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4. 51</u> 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
	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u>경우</u>
<u>4</u> . ~ <u>10</u> . (생 략)	<u>5.</u> ~ <u>11</u> . (현행 제4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